

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제5차 기후위기특별위원회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·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 등 〉
■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7392호)

2025. 9.

기후위기특별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신항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1.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 등	3

I. 제안경위

2025년 1월 9일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관리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,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 또한,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달성 현황이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곤란한 실정임.

이에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,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의2 신설).

III. 검토의견

1. 기후대응기금 사업 평가 근거 마련 등

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,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2조2 신설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<u><신설></u>	<u>제72조의2(기금의 평가) 기획재정</u> <u>부 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사</u> <u>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</u> <u>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9조제1항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또한 동법 제70조¹⁾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

1)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70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기반 조성·운영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산업·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,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·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·창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.

기후대응기금의 사업 성과관리를 환경부,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전체 임무와 비전이 부재하고 전략목표와 성과지표 등이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미흡한 상황이고, 성과달성 현황 역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참고로, 기후대응기금의 사업 중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환경부가 각각 수행²⁾하고 있고,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가 각각 수행³⁾하고 있는 상황으로, 이에 따른 성과지

1.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·운영

2.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산업·노동·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

3.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·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·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·창출 지원

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

5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·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

6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·홍보

7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

8.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

9. 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

10. 기금의 조성·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11.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

2)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(산업부)(6131-303),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(중기부)(6131-500),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(환경부)(6131-601)

3)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(기재부)(6131-300),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(산업부)(6131-311), 온실가스 국제감축

표도 개별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함에 따라 종합적인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개정안은 기후대응기금 관리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 및 종합적인 성과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.

다만, 기획재정부는 개정안과 같이 성과평가 결과를 별도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보다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하여 국회의 예산심의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, 성과평가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.

참고로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2조4)에서도 복권기금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고 있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5)에서도 지방자치

사업(국토부)(6131-410),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(환경부)(6131-610)

4) 「복권 및 복권기금법」 제22조(복권기금의 운용·관리 및 평가) ① 복권기금은 복권위원회가 운용·관리한다.

② 복권위원회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거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의 일부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진출(轉出)·예탁(預託)·출연(出捐) 또는 보조(補助)할 수 있다.

1. 「국가재정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

2. 「국가재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금

3. 제23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등

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(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 이하 “복권기금사업”이라 한다)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.

④ 복권기금의 운용, 관리 및 평가 대상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단체의 장은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권고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533

- 5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4조(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·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,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·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